

2040⁺ 정기예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2040⁺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 【가입대상】

-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으로 한다.(금융기관 제외)
- ②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경우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에 한한다.

제4조 【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제7조 【적용이율】

-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 ③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또는 인터넷뱅킹우대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이율 적용
- ④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 0.3%p를 제공한다.
 1. 급여이체 시 연 0.1%p
 2. 카드(신용, 체크) 가맹점 우체국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 시 연 0.1%p
 3. 우체국 체크카드 월평균 이용실적 해당 시 (개인, 단체 20만원 / 개인사업자 30만원 / 법인 100만원) 연 0.1%p
 4. 2040⁺ 자유적금 만기해지 후 전환가입 시 연 0.1%p
 5.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3개월 평잔 유지 시(개인

100만원 /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500만원) 연 0.1%p
6.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인 경우 연 0.1%p
※ 우편 우수고객 우대는 우체국창구 가입 시 적용

- ⑤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 【이율적용방식】

-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급여이체는 신규 가입 시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급여성이체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이체 기준은 『우체국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 제공기준을 따르며 해당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 기관으로부터 50만원 이상의 소속직원 급여이체가 지정급여일(±3영업일)에 있는 경우
 - 개인이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의 급여성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 개인이 50만원 이상 입금실적과 급여 등 입금내역 표시가 있는 경우

2. 카드(신용, 체크) 가맹점 우체국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은 만기해지 시점에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카드(신용, 체크)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이 되어 있으며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해지 시점까지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3.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은 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체크카드 월 평균 이용 실적(개인, 단체 20만원 / 개인사업자 30만원 / 법인 1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4. 2040⁺ 자유적금 만기해지 후 전환가입은 동일자에 2040⁺ 자유적금을 만기해지하고 2040⁺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5.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3개월 평잔 실적은 신규 가입일의 전전전월의 1일부터 신규 가입일 전일까지 수시입출식 예금 3개월 평잔 실적(개인 100만원 /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6.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수고객인 경우

※ 우편 우수고객 우대는 우체국창구 가입 시 적용

제9조 【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를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 【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으로 한다.

1. '카드(신용, 체크)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의 우대이율 항목은 우대이율 적용여부가 만기해지 시점에 결정되므로, 실적에 해당하는 경우 만기 해지시 해당 이자를 추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이 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만기일시지급식

| | |
|--------------|--|
| 창구 가입 |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 |
|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 |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월이자지급식

| | |
|---------------------|--|
| 창구 가입 |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를 통해 이자를 지급 ※ 단, 월 이자 지급을 자동이체 설정 시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
|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 | 직전 영업일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등록된 모계좌를 통해 이자를 지급 |

- ③ 예금주는 신규 가입시 제1항에서 정한 이자지급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제11조 【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 【만기후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 【특별중도해지】

- ① 예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하되, 가입 후 6개월 미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 및 예금주 배우자의 유학, 결혼, 이민, 퇴직 또는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

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우체국 창구에서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학 : 입학확인서 등 유학 확인서류 및 항공권
2. 결혼 : 청첩장 또는 혼인신고서
3. 이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이민 확인서류 및 항공권
4. 퇴직 또는 사업장의 폐업 : 퇴직증명서 또는 폐업 사실증명서

※ 예금주 배우자의 사유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서류 추가 제출

제14조 【분할해지】

- ① 최초 가입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단, 잔여예금은 1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 ② 분할해지는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며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 ③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5조 【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6조 【기타】

-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 ② 이 예금은 양도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